

부산광역시사하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41
----------	----

제출년월일 : 1998. 9. 17.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개정이유

양곡관리법 개정('94.1.5)에 따라 현행조례의 세부시행 사항이 양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현행규정의 존치 필요성이 없음.

2. 주요골자

부산광역시사하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 관한조례를 폐지한다.

3. 관계법령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22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6조

부산광역시사하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